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5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한정애・황 희・조 국

민홍철 · 송옥주 · 이학영

진선미 • 박지원 • 김교흥

민병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최초 1일의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난임치료 기간에 비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너무 짧고 최초 1일만 유급이어서 난임치료휴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9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의2제1항"을 "제18조의2제1항 · 제18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3일"을 "10일"로, "1일"을 "5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휴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 본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지원) ①
따른 <u>배우자 출산휴가</u> , 「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
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	
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	
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	②
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u>제18조의2제1항</u> 또는	<u>제18</u> 조의2제1항·제18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u> 조의3제1항</u>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u>.</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	

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u>3일</u>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u>1일</u>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u>②</u>·<u>③</u> (생 략)

<u>10일</u>
<u>5일</u>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